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1. 25(월)	
		작 성 사회조정실 식품의약품정책과 과장 김성곤 / 사무관 최종동 (Tel. 044-200-2379)	문 의 식약처 검사실사과 과장 이수두 / 사무관 강성필 (Tel. 043-719-2201)
<b>엠바고</b>	<b>1.25(월) 15시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b>		

## 안전총리, 수입식품 관리 강화해 ‘먹거리 안전’ 지킨다.

- 2월 4일 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’ 시행 앞두고, 검역소인 ‘용인 보세창고’ 방문
- ‘불량식품은 4대악’, 수입품 현지방문검사제 도입해 해외생산지부터 점검
- 황 총리, “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 영향, 철저히 관리해야”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월 25일(월) 경기도 용인지역의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검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.
- 이번 방문은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,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의 본격 시행(2월 4일)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수입식품은 연평균\* 신고건수가 6.3%, 중량이 4%, 금액이 9.6% 증가 추세에 있으며, 2016년에는 약 63만 6천건, 267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.

\* 연평균 계산: 2011년~2015년 연간 수입(건수/중량/금액)증가율의 평균치

□ 그간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「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」을 구성하여 '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'을 추진해 오고 있다.

○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위생관리가 취약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**강도 높은 단속\***을 실시하고 있다.

○ 강력한 단속과 함께,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해사범을 영구히 퇴출하기 위한 **형량하한제**(최소 1년 이상 징역),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**부당이득환수제**(최대 10배)를 도입하였다.

\* 도입시기 : 식품('14.1월 시행), 축산물('14.11월 시행), 건강기능식품('15.5월 시행)

□ 정부는 **FTA 확대**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「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」을 제정(15.2월)하여 다음달 4일부터 본격 시행하며,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우선 **현지방문검사제**가 도입되어 해외 제조업체·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 등을 실시하고, 검사를 거부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**수입중단**하거나 **시정 및 예방조치**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 방침이다.

○ 또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·가공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하고, 식약처는 업체의 정보\*를 **전산시스템**에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이다.

\* 업체명, 소재지, 식품종류,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

○ **통관단계**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거 부적합 이력, 국내·외 정보를 종합·분석하여 **수입자와 수입식품**을 3개 그룹으로 차등분류하고 유해우려가 있는 식품과 수입자를 **집중검사** 해나갈 계획이다.

\* 수입자 : (우수업체) 신속검사, (일반업체) 현행수준 검사,  
(특별관리업체)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집중 검사

\*\* 수입식품 : (1등급) 현행수준 검사, (2등급) 최초 수입부터 5회 정밀검사  
(3등급) 1~2년 동안 집중 정밀검사

○ 유해우려가 있는 **해외 직접구매 식품**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,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에도 **영업신고\***를 의무화하고,

- 유해물질 등 정보가 확인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.

\* ‘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’을 신설

□ 한편, **황 총리**는 방문 현장에서 경인지방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 검사과정과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, 직접 냉동 새우·축산물이 부패·변질되지 않았는지 **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도 확인**하였다.

○ **황 총리**가 방문한 용인 보세창고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쇠고기,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많은 물량(약 66%)이 통관되어 서울,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되는 **안전관리의 중요한 지점**이다.

\* ‘15년 전체 축산물 수입량 : 1백 28만 5천톤

용인·광주검사소 검사 축산물 물량 : 84만 9천톤(전체 축산물의 66%)

□ 이 자리에서 **황 총리**는 “국민들이 소비하기 이전에 **유해식품을 차단**”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**획기적으로 개선**“할 필요가 있다며,

○ “현지 제조·가공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등 **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**“할 것을 지시했다.

- 황 총리는 또 “통관검사는 수입식품을 감시하는 최일선 관문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”라고 강조하며
  - 검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“사명감을 가지고 위해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”해 줄 것을 당부했다.
  
- 황 총리는 특히 “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·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식약처에 지시했다.

## 참고 1 수입식품 증가 현황

### 연도별 수입신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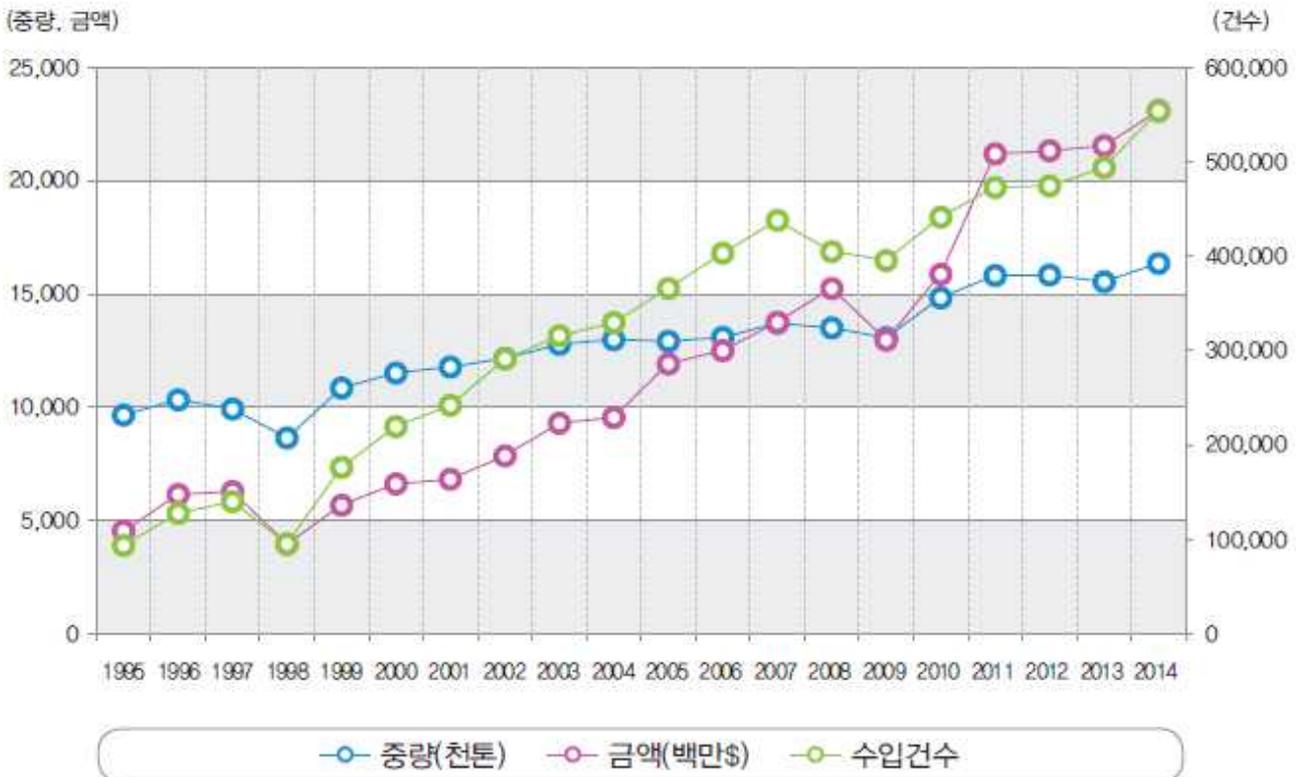
- 2015년 수입신고된 건수는 중국, 일본, 미국 등 172개 국가로부터 총 598,082건, 중량은 17,064천톤, 금액은 24,406백만달러 수입

< 최근 5년간 수입신고 건수 >

년도	수입건수	증가율(%) <sup>1)</sup>	중량(kg)	증가율(%) <sup>1)</sup>	금액(\$)	증가율(%) <sup>1)</sup>
2011년	473,136	▲7.2	15,822,058,378	▲6.7	21,191,008,517	▲33.4
2012년	474,648	▲0.3	15,837,143,774	▲0.1	21,333,762,434	▲0.7
2013년	494,242	▲4.1	15,541,310,150	▼1.9	21,551,768,473	▲1.0
2014년	554,177	▲12.1	16,358,299,693	▲5.3	23,111,675,025	▲7.2
2015년	598,082	▲7.9	17,064,307,076	▲4.3	24,405,936,239	▲5.6

1) 전년대비 증감률(2010년 수입현황 : 441,530건, 14,830,866,029kg, 15,881,423,144\$)

<연도별 수입신고 현황>



## 참고 2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상황

### □ 수입 전(前) 단계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

- (농산물·가공식품) 부적합 이력 및 수입물량이 많은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, 우수 수입업소\*를 지정하여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
  - \*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수입업소
- (축산물) 부적합 발생이력 및 수출물량이 많은 해외작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실사
- (수산물) 위생약정 체결국가 및 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실사
  - \* 위생약정 체결 : 중국 등 6개국, 부산물 : 미국 등 27개국

### □ 통관단계 안전관리

- (원칙) 수출국, 품목, 유해물질별로 위해도를 분석하고 위해정도에 따른 정밀검사 비율 차등(3%~100%) 적용
- (농산물·가공식품)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 시스템(OPERA)\*을 운영하여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정밀검사 실시
  - \* 과거 수입이력, 부적합 정보,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수집·분석하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자동선별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전산시스템
- (축·수산물) 국내외 위해정보, 부적합 내용을 수집·분석하여 잔류 물질 등 유해물질 집중관리

### □ 국내 유통단계 수입통관 이후 안전관리

- 서류검사·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,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국내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·검사 실시
- 건강기능식품·영유아식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관리 실시

### 참고 3

##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전·후 비교

구 분		현 행	개 선
수 입 前 단 계	제 조업체 등록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공식품·농산물의 경우 「해외제조업체 등록제」 없음</li> <li>축산물(30개국)과 수산물(6개국)은 시행 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」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등록 의무화</li> <li>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 신고 거부 가능</li> <li>축산물은 멸균된 가공품까지 수입 위생평가 및 작업장 등록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
	현지실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공식품·농산물에 임의 현지실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상대국(업소) 거부 시 조치수단 없음</li> </ul> </li> <li>축산물과 수산물은 현지실사 시행 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」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식품으로 확대 실시</li> <li>현지실사 거부 또는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통 관 단 계	제 조업체 차등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 제조업체 위생수준 분석 없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해물질이 검출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외 제조업체를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3등급 분류, 차등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등록정보, 과거 이력,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, 일반, 특별관리로 분류, 특별관리 업체에 검사역량 집중</li> </ul> </li> </ul>
	문제제품 집중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품의 특성, 제조환경 고려 없이 기준·규격 중심의 검사 실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로운 위해물질 출현, 제외국 식품 사고 등 외부 위해요인을 고려하여 제품을 3등급(일반, 주의, 집중관리) 분류, 차등 검사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집중관리 제품에 검사역량 집중</li> </ul> </li> </ul>
유 통 단 계	이력추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,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단계적 시행 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식품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조제유류)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이력추적을 단계적 적용.</li> </ul>
	유통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별도 수거·검사계획 없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매년 전체 유통식품 전체 수거검사 중 5~10% 수준으로 시행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통관리 계획 수립·시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후관리</li> <li>* 집중단속 및 추출시스템에 의한 수거검사</li> </ul> </li> </ul>

## 참고 4

# 현지방문 검사제, 해외 제조업체·가공업체 등록제

### □ 현지방문 검사제

- **(절차)** 수출국 정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외제조업체에 현지 점검을 사전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
  - \* 현지실사 일정을 식약처장과 협의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협의를 거부·기피하는 경우 현지실사 거부로 간주
- **(방법)**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 점검 기준\*(식약처 고시)에 따라 실시
  - \* 서류관리, 원료관리, 제조공정관리, 개인위생관리, 제품 품질관리 등 점검
- **(결과조치)** 문제가 확인된 경우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(최대 90일)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
  - \*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
- **(수입중단 해제)**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 또는 위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수입중단 해제 가능

### □ 해외제조업체·가공업체 등록제도

- **(절차)** 해외제조업소\* 설치·운영자 또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 전(前)까지 업소명, 소재지,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등록
  - \* 해외제조업소 : 수입식품등(축산물 제외)의 생산·제조·가공·처리·포장·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(수산물을 생산·가공하는 선박포함)
  - \* 수산물 약정국(6개국) 등록시설, 수입부산물 등록시설(27개국) 제외
- **(방법)** 온라인 전산시스템 또는 우편(FAX)
- **(등록정보)** 업소명, 소재지, 영업의 종류, 생산품목, HACCP 등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10개 기본항목
- **(등록 유효기간)** 2년
- **(수입신고 금지)**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